

##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2. 3. 11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3. 1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2. 3. 18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통행정과장 배효원)

제안이유

-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하여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 교통문화 전환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보호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 및 이용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
- 자전거활성화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-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

의안번호	제580호
의결년월일	2002. 3. 20 (제94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3. 1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하여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 교통문화 전환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보호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 및 이용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2조)
- 자전거활성화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-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
부천시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# 부천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)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시설물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
- 2.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
- 3.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

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
- 2.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
- 3.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
- 4.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
- 5. 기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

③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.

④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제4조(개선기준의 설정)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.

제5조(재정지원)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시민의 권리와 책무) 모든 시민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.

- 1.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
- 2.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
- 3.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
- 4.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와 협력할 책무

제7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운영) ①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

④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이나 주택단지,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⑤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유지관리에 관한 사항,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 지정·운영) ①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학교 등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범기관은 근로자, 학생 등이 통근·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한다.

③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